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23-1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재무과)	1
2023-2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림과)	17
2023-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농촌과)	31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023-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게 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나. 감면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다. 감면내역

- 2023 주민세 면제 : 개인분, 사업소분(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2023 자동차세 면제 : 소유분
- 2023 재산세 면제 :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라.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나. 행정안전부 시행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공문서(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

다. 행정안전부 시행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 공문서(지방세정책과-4561호, 2022.11.7.)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거창군수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2. 감면내역

- 2023 주민세 면제 : 개인분, 사업소분(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2023 자동차세 면제 : 소유분
- 2023 재산세 면제 :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3.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
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
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
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
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
다)하는 지방세 감면
 -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

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1. 지방세정책과-4442(2022.11.1.)호와 관련됩니다.
2.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계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감면대상자 자료구축 등 지방세 감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정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부산광역시(세정운영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지방세정책담당관), 남세협력담당관, 광주광역시(세정과장),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초세정의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담당관),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차세대세정기획부장)

주무관 공저훈 지방세특례제 간결 2022. 11. 2.
도과장 권순례

협조자

시행 지방세특례제도과-2488 (2022. 11. 2.) 접수 세정과-21147 (2022. 11. 3.)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여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19호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6-3853 팩스번호 044-204-8971 / kongsin@korea.kr / 비공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2022. 11.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쏘지 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2 지방세 감면 추진

1 지원 방식

- 쏘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2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3 감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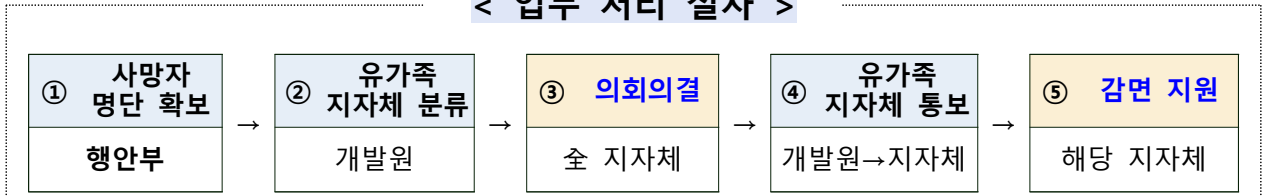
- '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자 동 차 세 소 유 분 재 산 세	•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 역 자 원 시 설 세	• 사망자 가족 (소방분)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3 협조사항

< 업무 처리 절차 >



- (개발원) 사망자 내역을 토대로 가족관계 전산 연계, 감면대상자 (유가족)의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22. 2기분 자동차세부터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22년 11월 중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完, '23년까지 감면 조치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자동차세(12월)에 대한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

- ✓ 각 지자체에서는 본 감면 의결안 활용시, 관할 세목만 기재
-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可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도지사(시장)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붙임3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561호, 2022.11.7.]**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

1. 지방세정책과-4442(2022.11.1.)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부는 이태원 사고('22.10.29.)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방세정 지원방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조치 안내(자치단체 대상)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정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부산광역시(세정정책담당관),세정운영담당관,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지방세정책담당관),남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세정과장),대전광역시(세정과장),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조세정의과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담당관),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이수호	서기관	홍자은	지방세정책과	전공	2022. 11. 7.
장	이현정					
합조사						
시행	지방세정책과-4561	(2022. 11. 7.)	접수	세정과-21446	(2022. 11. 7.)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814	팩스번호	044-204-6968	/ suholee@korea.kr	/ 비공개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조치 안내

◆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한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방세정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대상범위)** 현재 복지부 및 중대본을 통해 집계되어 자치단체로 통보되는 사망자 및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 부모·배우자 및 자녀, 그 외 사실상 보호자(세월호 사고, 이태원 사고 감면기준 동일)

○ **(유가족)**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방세정 지원조치 실시

○ **(부상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상자 및 가족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 등 필요한 지방세정 지원 조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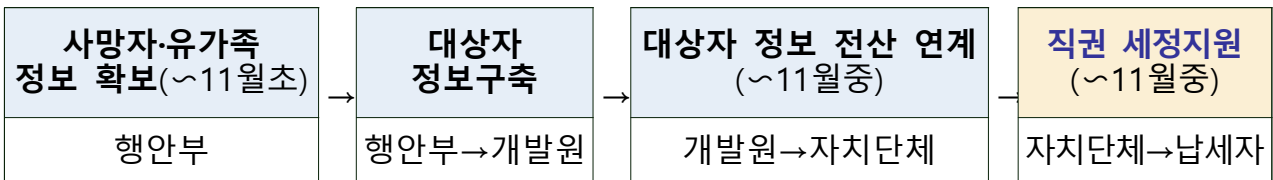
- 부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 세 부담 경감이 아닌 세정운영 조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근거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근거규정 :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등), 체납 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세무조사 유예(「지방세기본법」 §83)

2 조치사항

○ **(유가족)** 각 자치단체로 통보된 사망자 및 유가족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유가족 정보연계 완료시 추후 재안내할 예정(11월 중순)



○ **(부상자)** 자치단체장이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시, 납세자보호관 및 세정부서가 협업하여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내용·절차를 안내*

* 현재 중대본을 통해 부상자 주소지 자치단체로 부상자 정보 제공중

※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지원방안 안내」
(지방세정책과-4442호, '22.11.1.)시 既 통보내용

①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 감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대상 지자체) 사망자 가족이 거주하거나, 그 가족의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

② 지방세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기한연장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등)

* 징수유예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③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유예) 사고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직권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 가능(「지방세기본법」 제83조)

④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

- 세외수입 성격별로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지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처분 유예), 과태료·그 외 부과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요구이유

-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2023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나. 위 치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 다. 사 업 비 : 92,666천원(국 46,333 도 32,433 군 13,900)
- 라. 사 업 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 마. 시설현황
 -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등
 -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산림치유) 기획·운영
 - 산림서비스(대면 및 비대면 병행)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 사. 위탁기간 : 2023. 4. ~ 12.(예산범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 아.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평가

3.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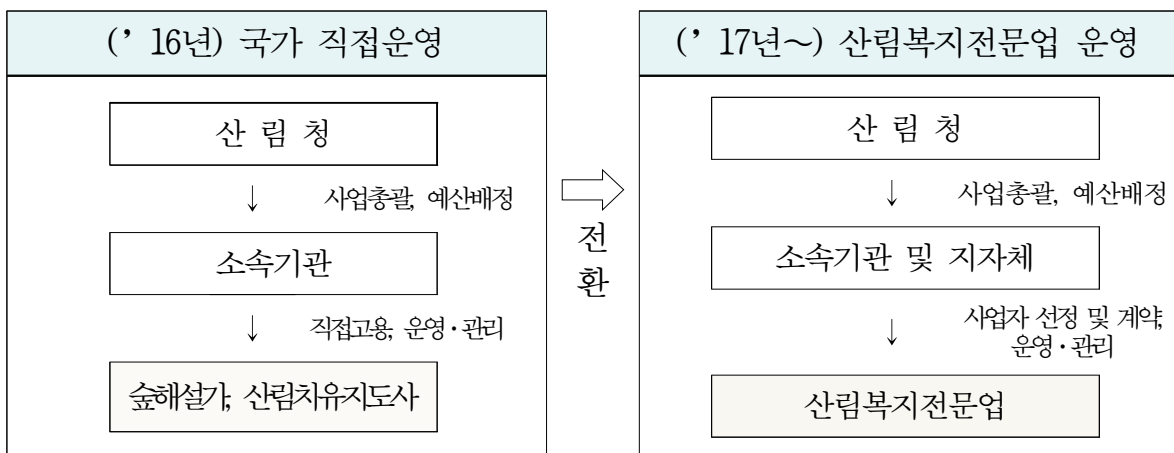
가. 2022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22. 4. ~ 12.
- 장 소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테크로드, 명상장 등
- 대 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
- 인 원 : 1회 20명이내
- 위탁기관 : 좋은숲(대표 신승호)
- 운영방법 : 각 프로그램별 숲해설가(1인)·산림치유지도사(2인) 자율 진행
- 참여인원 : 총 6,664명(숲해설 2,111명, 산림치유 4,553명)
-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예약, 당일 현장모집
- 체 협 료 : 숲해설 무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프로그램 :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숲 해 설 : 주5일, 일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산림치유 : 주6일, 일2회(09:30~12:00, 13:30~16:00)
-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
- 세외수입 : 금42,501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숲해설 무료

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분야 활성화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다. 관계법령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거창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관 계 법 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계획 수립)

치유의 숲시설의 운영·관리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2.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제9조(프로그램 운영)

- ① 운영·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다.
- ③ 운영·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향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계획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를 통해 민간 위탁(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국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산림복지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성 강화
- 숲해설 및 산림치유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장기 일자리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성 향상과 민간영역 활성화 도모

□ 관련근거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2023년 산림치유 운영사업 지침」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16.3)에 따라 '18년부터 산림치유 운영을 직접고용에서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으로 전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육성·지원
- * (기존) 직접고용 → (2018)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종합산림복지업) 운영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2. 2022년 운영결과

□ 추진사항

- 2022. 1. :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신규사업 운영계획 수립
- 2022. 2. :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의회 동의 승인
- 2022. 3.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 2022. 4. : 위탁업체 협약체결, 힐링랜드 최적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결과

- 운영기간 : 2022. 4. ~ 12.
- 장 소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테크로드, 명상장 등
- 대 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
 - ※ 신청·예약제로 운영하며 연령층, 구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인 원 : 1회 20명이내
- 위탁기관 : 좋은숲(대표 신승호)
- 운영방법 : 프로그램별 숲해설가(1인)·산림치유지도사(2인) 자율 진행
- **참여인원 : 총 6,664명(숲해설 2,111명, 산림치유 4,553명)**
-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예약, 당일 현장모집
- 체 협 료 : 숲해설 무료/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프로그램 :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숲 해 설 : 주5일, 일 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산림치유 : 주6일, 일 2회(09:30~12:00, 13:30~16:00)
 -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
- 세외수입 : **금42,501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숲해설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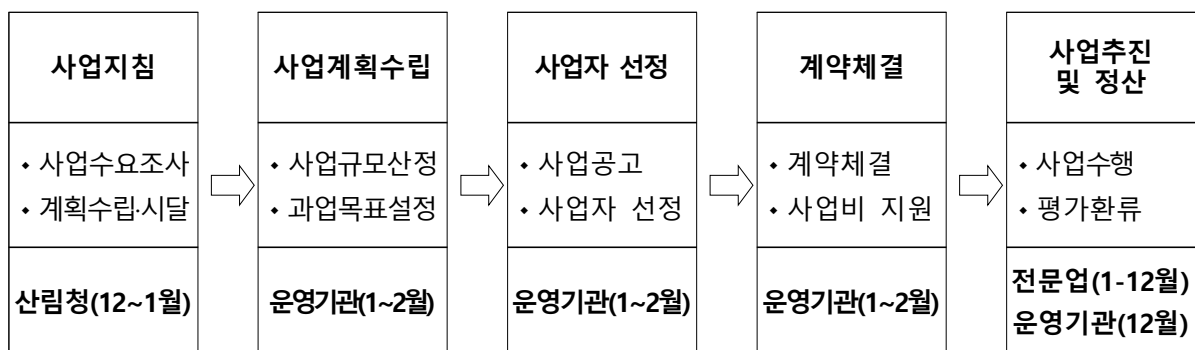
○ 현장사진



3. 향후계획

□ 개요

- 사업명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장소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명상장 등
- 사업비 : 92,666천원(국 46,333 도 32,433 군 13,900)
 - 숲해설 : 28,666천원(국 14,333 도 10,033 군 4,300)
 - 산림치유 : 64,000천원(국 32,000 도 22,400 군 9,600)
- 사업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 위탁기간 : 2023. 4. ~ 12.(예산범위 내)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 위탁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 및 산림치유) 기획·운영
- 추진절차 : 계획수립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운영·평가



□ 추진일정

추진내용	주관	추진일정
· 2023년도 숲해설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지침 통지	산림청	'23. 1월
· 2023년도 숲해설산림치유지도사 위탁 동의안 군의회 제출	거창군	'23. 1월
· 2023년도 숲해설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계획 수립	거창군	'23. 2월
· 숲해설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협약체결	거창군	'23. 2월
· 숲해설산림치유지도사 위탁사업 운영	수탁업체	'23. 4~12월
· 숲해설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평가	거창군	'23. 12월

4. 부서 의견

- 산림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 고품질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힐링랜드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요구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삼봉산 권역 운영위원회 등 4곳에 관리위탁을 갱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나. 위탁 현황(4개 지구)

위탁 지구	위탁 기간(5년)	위탁기관	위 치	위탁 시설물(면적)
삼봉산 권역단위	2018.3.14. ~ 2023.3.13.	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베짱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	- 고제면 봉계리 85-1 - 고제면 봉계리 89	- 다목적센터 559.76㎡ 1동(사무실, 북카페, 체험실, 식당, 회의실, 체험객실) - 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1식
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8.4.6. ~ 2023.4.5.	(사) 신 원 면 생활체육협의회	-신원면 괴정2길 50	- 사랑누리센터 453㎡ 1동(사무실, 헬스장, 이동센터 등) - 스포츠시설 1식, 공용주차장 1식, 어린이놀이터 1식 등
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8.4.30. ~ 2023.4.29.	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	- 남상면 무촌리 656	- 다목적센터 980.03㎡ 1동(사무실, 헬스장, 대회의실 등) - 체육공원 1식, 공용주차장 1식, 어린이놀이터 1식 등
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8.5.30. ~ 2023.5.29.	가조권역 운영위원회	-가조면 마상리 316-25	- 커뮤니티센터 204.0㎡ 1동(사무실, 회의실) - 생태주차장(2,740㎡ 95대)

다. 위탁대상 사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위탁 운영 관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 농촌교육,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교류, 지역민 화합 등의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됨

라. 운영계획

○ 위탁기관 : 4곳(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사) 신원면 생활체육협회, 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 가조권역운영위원회)

○ 위탁내용

위탁 지구	위탁 기간(3년)	위탁기관	위탁업무	위탁비용
삼봉산 권역단위	2023.3. ~ (3년간)	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베짱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 무상 위탁 ※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
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23.4. ~ (3년간)	(사) 신 원 면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 무상 위탁 ※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
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23.4. ~ (3년간)	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 무상 위탁 ※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
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23.5. ~ (3년간)	가조권역 운영위원회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 무상 위탁 ※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

※ 갱신기간 3년

마. 향후일정

- 위탁지구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년 2월부터 순차적 체결
- 해당지구 위탁운영 : 2023년 3월부터 순차적 운영

3. 참고사항

가. 위탁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3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 제27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 「위탁협약」 제4조

다. 민간위탁(갱신) 추진 계획 : 따로 붙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민간위탁(갱신) 추진 계획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 추진 계획입니다.

I 기본 현황

- 사 무 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위탁 운영·관리
- 갱신시설 : 4곳

위탁 지구	위탁 기간	수탁기관	소재지	주요시설
삼봉산 권역단위	2018.3.14. ~ 2023.3.13.	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베짱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	-고제면 봉계리 85-1 -고제면 봉계리 89	- 다목적센터 559.76㎡ 1동(사무실, 북카페, 체험실, 식당, 회의실, 체험객실) - 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1식
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8.4.6. ~ 2023.4.5.	(사) 신원면 생활체육협의회	-신원면 괴정2길 50	- 사랑누리센터 453㎡ 1동(사무실, 헬스장, 아동센터 등) - 스포츠시설 1식, 공용주차장 1식, 어린이놀이터 1식 등
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8.4.30. ~ 2023.4.29.	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	-남상면 무촌리 656	- 다목적센터 980.03㎡ 1동(사무실, 헬스장, 대회의실 등) - 체육공원 1식, 공용주차장 1식, 어린이놀이터 1식 등
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018.5.30. ~ 2023.5.29.	가조권역 운영위원회	-가조면 마상리 316-25	- 커뮤니티센터 204.0㎡ 1동(사무실, 회의실) - 생태주차장(2,740㎡ 95대)

II 관리위탁(갱신) 운영(안)

- 위탁기간 : 3년(2023년 ~ 2026년) ※당초 5년 → 갱신 3년
- 위탁기관 : 해당 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법인)
- 위 탁 료 : 무상
 - 위탁기간 중 관리위탁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위탁범위
 - 위탁시설물의 유지관리(건물 및 기계 장비 등)
 - 소규모 수리는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
 -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
- 평가 방법 : 그간 운영 경과 자체평가 시행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관리위탁 갱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3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 제27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 「위탁협약」 제4조 “관리 위탁기간 동안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없으면 관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Ⅲ 향후 추진 일정

- 2022. 12. : 위탁운영 결과보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3. 1. : 의회 심의·의결
- 2023. 3. ~ 5. : 수탁자 확정 통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0.0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2014.10.0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2014.10.0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호신설 2014.10.0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4.10.01.)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